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요구·통보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훈계대상자 ① 충청남도 천안시 ○○○○과 지방○○주사 ○○○

②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서기 ○○○
(전 ○○과)

③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주사보 ○○○

④ 충청남도 서산시 ○○면사무소 지방○○주사보 ○○○
(전 ○○과)

⑤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주사보 ○○○
(전 ○○과)

⑥ 충청남도 당진시 ○○과 지방○○서기 ○○○

⑦ 충청남도 부여군 ○○면사무소 지방○○주사보 ○○○
(전 ○○과)

⑧ 충청남도 청양군 ○○○○사업소 ○○○○ ○○○
(전 ○○○○과)

⑨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주사 ○○○

⑩ 충청남도 ○○○○원 지방○○주사보 ○○○
(전 ○○○○과)

내 용

위 관련자 중 지방○○주사 ○○○은 2014. 1. 10.부터 현재까지, 지방○○서기 ○○○은 2015. 1. 1.부터 2017. 7. 10.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5. 9. 11.부터 2017. 1. 1.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6. 1. 2.부터 2017. 1. 1.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7. 1. 2.부터 2017. 7. 7.까지, 지방○○서기 ○○○은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6. 3. 28.부터 2016. 12. 31.까지, ○○○○ ○○○은 1992. 5. 8.부터 2017. 8. 1.까지, 지방○○주사 ○○○은 2016. 7. 21.부터 현재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5. 1. 16.부터 2017. 4. 2.까지 국토교통부 등¹⁾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²⁾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³⁾는 건설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⁴⁾를

-
-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는 국토교통부, 타 지방자치단체,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에서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 2)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 4)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횡수별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횡수별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부과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및 8개 시·군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업체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천안시(○○○○과)에서는 2016. 11. 7. 국토교통부로부터 (주)○○○○(대표자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미통보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주)○○○○에서 ○○○○○ ○○공항(주) 물류센터 건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2016. 9. 30. 준공하였다고 2016. 12. 20.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충청남도(○○○○과) 및 9개 시·군에서는 2016. 11. 7.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미통보 한 혐의로 통보받은 180건 중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 이후에 통보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2건에 대하여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해당 시·군으로 위임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⁶⁾.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공주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 태안군수는

[훈계] 위 사람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 이후에 통보한 168건 및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12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위한 절차를 각각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에서 지적되자 충청남도 및 공주시는 2017. 11. 23., 당진시는 2017. 11. 17. 위반 건설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음